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의 필요성과 필요 재원 추계

안종범*·전승훈**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부모가구 자료와 분가한 자녀가구 자료를 연결하여 분석해 본 결과 부모세대 교육격차가 부모세대의 소득격차를 가져오고, 부모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세대 교육격차와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등, 교육격차와 소득격차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세대간 이진을 막는 유용한 방법은 자녀의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에 더해, 저소득층 자녀 전체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해 줄 경우 소요되는 재원을 추계해 보았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 및 대학진학 연령에 속해 있는 가구원이 모두 각급 학교에 진학한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현금급여보다 적은 가구의 가구원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약 1조 90억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구의 가구원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약 1조 5,136억원, 그리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보다 적은 가구의 가구원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약 2조 979억원으로 추계되었다.

1. 문제제기

Schultz(1961), Becker(1964, 1975), Mincer(1974) 등에 의해 발전된 인적자본론(human capital theory)에 따르면 교육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가능하게 한다. 교육의 역할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선별가설(screening hypothesis) 역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아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Stiglitz(1975) Wolpin(1977) 등에 의해 발전된 선별가설은 교육이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유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려내는 신호(signal)의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즉, 개인의 능력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노동시장에서 고용주는 개인의 교육수준을 개인의 능력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인적자본론과 선별가설 등의 예측에 따르면 교육수준의 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한편 Schwenk(1986), Becker and Murphy(1988) 등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아져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 자녀의 인적자본에 적정치 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즉 부모의 소득수준은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다시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교육격차와 소득격차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인적자본 투자에 정부가 개입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 우선, 교육과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투자를 효율적으로 높여,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자녀 간에 존재하는 기회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소득분배 상태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근로를 통한 복지(workfare)를 보다 생산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근로를 통한 복지의 개념은 단순히 일자리를 통한 복지라는 개념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통한 복지라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교육이다. 즉, 교육투자에 대한 국가 개입으로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투자 수준을 높이는 것은 저소득층이 보다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 분배문제를 해소하고, 근로를 통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및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정부 개입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의무교육(compulsory schooling)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계의 인적자본투자 행위에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9년간의 의무교육¹⁾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타급여인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지원기준을 넘어서는 가구 중에서 교육비를 제외할 경우 소득수준이 현금급여 지원기준 보다 낮아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특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급여는 지원대상이 중·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일자리 질 및 소득격차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 수준이다. 개인적인 선호에 의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할 경우 20%에 해당하는 미취학 학생의 대부분은 저소득층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 즉 대다수의 학령 인구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교육수준의 격차를 안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몇몇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 대학의 등록금 면제 학생 중 저소득층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되던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금융상의 지원을 정부보증대출로 전환하는 등 몇몇 방안을 마련하고

1)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 벽지에서 시작되어 1994년 읍 면지역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부터는 시 광역시 특별시에까지 확대되었다.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진학을 유인하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저소득층 자녀의 미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가 자신의 자녀세대에 대한 교육투자를 상대적으로 줄이게 만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비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는 기존의 논의에서 검토된 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세대간 이전이 실제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실태에 대해 검토한 후, 저소득층 교육비지원방안 및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크게 교육수준이 임금 및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Schultz, 1974; Becker, 1975; Mincer, 1974; Ehrenberg & Smith, 1994; 이정우, 1995), 교육비지출 결정요인(Lino, 1990; 문숙재·김순미·김성희, 1996; 정영숙, 1996; 김성희, 1996) 부모의 교육수준 등 가족 배경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Abdel-Ghany & Schwenk, 1993; 김기현·방하남, 2005)등의 주제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부모의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자녀의 교육격차,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교육비지원과 관련하여서도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정부의 교육비지출 등을 검토하는데 그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제 소요 재원 추계로 논의를 확장한다.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 II장에서는 부모세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 부모세대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수준이 자녀를 위한 교육비지출과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노동패널자료』(이하 노동패널)를 사용하여 1차년도 원가구와 2~7차년도 사이에 분가한 자녀가구를 횡으로 연결(merge)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소요되는 재원을 추계한다. 마지막으로 제 IV장에서는 글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II 소득격차와 교육격차의 세대간 이전

1. 분석자료

부모세대 혹은 자녀 세대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인 가구자료 사용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부모세대의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자녀 세대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인 가구자료 사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부모세대의 가구자료와 부모세

대로부터 분가한 자녀 가구의 자료를 횡으로 연결(merge)한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자료의 구축방법을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세대의 자료는 1차년도 자료와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하였다. 1차년도 자료와 2차년도 자료를 동시에 사용한 이유는 『노동패널자료』의 경우 가구주 특성 및 가구 특성 자료는 조사 당해연도의 자료가 조사되지만, 소득 및 소비수준은 전년도 자료가 조사되기 때문이다.²⁾ 따라서 1차년도에 조사된 1998년 기준 가구주 및 가구 특성자료와 2차년도에 조사된 1998년 기준 소득 및 소비 자료를 연결하여 부모세대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자녀 세대의 자료 구축에는 7차년도 자료와 8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우선 7차년도 가구자료 중 2~7차년도 기간 중 분가한 자녀가구의 2004년 기준 가구주 및 가구 특성 자료를 구한 후, 여기에 8차 년도에 조사된 2004년 기준 소득 및 소비 자료를 연결하여 자녀세대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부모세대 자료와 자녀세대 자료를 횡으로 연결한 결과 총 관측수는 459가구이다.

<표 1>은 분석자료의 기초통계치이다. 부모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1998년 기준 54.59세이며, 가구주 성별은 남성이 88%이고, 배우자가 존재하는 가구가 85%이다. 가구주 교육연수는 평균 8.79년으로,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경상소득은 1998년 기준으로 평균 172.22만원이며, 가구원 수는 평균 4.57명인데, 이중 고등학생 이하자녀수는 0.42명, 대학생 이상 자녀수는 평균 0.55명이다. 부모가구 중 교육비를 지출한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40.57만원이며, 이중 공교육비 지출이 38.11만원, 사교육비 지출액은 19.25만원이다. 분가가구의 경우 2004년 기준 가구주 평균연령은 31.89세이며, 남성가구주의 비중이 90%,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은 80%였다. 가구주 교육연수는 평균 13.78명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고졸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가구원수는 2.69명이고, 월평균 경상소득은 257.79만원이다.

<표 1> 분석자료의 기초통계치

	부모가구(1998년)	분가가구(2004년)
가구주 연령	54.59	31.89
가구주 성별(남성 = 1)	0.88	0.90
배우자 유무(유 = 1)	0.85	0.80
가구주 교육연수	8.79	13.78
가구원 수	4.57	2.69
고등학생 이하 자녀수	0.42	
대학생 이상 자녀수	0.55	
경상소득	172.22	257.79
교육비 지출	40.57	
공교육비 지출	38.11	
사교육비 지출	19.25	
관측수	459	

<표 2>에서는 부모세대 가구주 교육수준 별로 가구소득, 교육비지출액, 분가한 자녀의 교육연수, 분가한 자녀가구의 가구소득 등을 비교한 것이다. 부모세대의 가구주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2) 1차년도 자료에서는 전년도 자료가 아닌, 조사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소득 및 소비가 조사되었다.

고졸,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전문대졸 이상을 하나의 범주로 묶은 이유는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졸 등을 각각의 범주로 묶기에는 개별 관측치가 너무 작기 때문이다. <표 2>에 따르면 부모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구의 소득수준이 높고, 자녀에 대한 교육비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분가한 자녀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가구주 교육수준 별 가구소득 및 교육비지출, 분가가구의 소득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 소득(1998년 기준)	97.43	144.01	173.35	206.89	226.58
교육비지출(1998년 기준)	17.00	33.44	37.13	46.76	57.05
공교육비지출(1998년 기준)	20.83	32.89	34.02	42.21	51.95
사교육비지출(1998년 기준)	7.80	16.86	18.21	21.28	23.44
분가가구 가구주 교육연수(2004년기준)	12.85	13.15	13.53	14.47	15.08
분가가구 가구소득(2004년기준)	217.74	252.19	263.17	267.26	276.55
관측수: 전체	48	126	104	143	38
교육비 지출 가구 수	17	45	53	90	21
공교육비 지출 가구 수	12	35	45	76	19
사교육비 지출 가구 수	5	21	24	47	9

2.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이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 2절에서는 부모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부모가구 소득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모가구 소득결정요인 추정모형의 설명변수로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의 자승, 가구주 성별, 가구주 배우자 유무, 가구주 교육연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비경활을 기준으로 임금근로더미, 비임금근로더미, 실업더미 사용)가 사용되었으며, 교육비지출 결정요인 추정모형의 설명변수로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구주 배우자유무, 가구주 교육연수, 고등학생 이상 학생수, 전문대 이상 학생 수, 가구소득, 자가소유 더미 등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가구 교육비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가구주의 직업, 직종, 경제활동상태 등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변수는 가구소득과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³⁾

추정모형별로 주요 설명변수의 설명력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소득 결정모형에서 가구주 연령의 증가는 양의 부호를, 가구주 연령 자승은 소득과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과 연령 사이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다가 일정시점이 지나면 소득이 감소하는 역 U자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구주 성별 역시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별, 가구주 교육연수, 임금근로더미, 비임금근로더미 등은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3) 실제로도 교육비지출결정요인의 설명변수로 가구주의 직업, 경제활동상태 등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시킨 모형을 추정해본 결과 크게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의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임금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등 현재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이 비경제활동가구의 소득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더미는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대체로 은퇴를 하였거나, 자산소득으로 소비를 충당하는 집단일 것이다. 그런데 실업자의 경우 노동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소득 역시 높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보다도 소득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가구교육비추정결과에서는 가구주 교육연수, 학생수, 가구소득 등과 관련된 변수들은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 소유자의 경우 자가마련을 위해 투자해야할 자금을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은 부모세대 가구소득 결정요인과 가구 교육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이다. 가구소득 결정요인 추정 결과 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자승, 가구주 교육연수, 임금근로자 더미, 비임금근로자 더미가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 및 기대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단, 가구주 성별의 경우 양의 부호가 나타났지만, 유의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부모세대 가구소득 결정요인 추정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가구주의 교육연수가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인적자본론과 선별가설 등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가구주 교육격차가 가구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비 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에서는 가구주 교육연수, 전문대 이상 학생 수, 가구소득 등이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 및 기대했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존재와 고등학생 이하 학생 수는 양의 부호를 가졌지만, 유의수준이 10%로 크게 높지는 않았다. 고등학생 이하 학생 수의 유의수준이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공교육비가 들지 않으며, 고등학생의 공교육비는 월1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효과가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모세대의 조사시점이 1998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인해 가계가 사교육비를 상당부분 줄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와 같은 거시경제 충격이 가계의 공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가소유 더미변수가 음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교육비지출 결정모형 추정결과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가구주 교육연수와 가구소득이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 결과는 가구주의 교육격차 및 소득격차가 교육비지출 격차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투자가 적정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자녀세대의 교육격차 및 소득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한편 분석결과 초중고생보다는 전문대 이상 학생이 1명 증가할 때 교육비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문대 이상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비부

담이 훨씬 커지며, 그만큼 적정 수준의 인적자본투자와의 괴리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투자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비 부담이 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문대학 이상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3> 가구소득 및 교육비지출 결정요인 추정결과

	가구 소득 모형		교육비지출 모형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상수항	-252.3140	145.6398 *	-2.2645	13.2006
가구주 연령	11.8443	5.3583 **	0.0730	0.2100
	-10.7248	4.8615 **		
가구주 성별	25.0986	26.5497	-8.3121	8.5541
가구주 배우자 유무	-12.8123	23.4345	11.8302	7.0288 *
가구주 교육연수	6.9441	1.2681 ***	1.0540	0.4359 **
고등학생 이하 학생 수			2.9727	1.7852 *
전문대 이상 학생 수			19.1713	1.8837 ***
가구소득			0.0385	0.0138 ***
자가소유			-0.3768	3.8443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임금근로	54.6848	15.1342 ***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비임금근로	32.9092	14.6385 **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실업	-2.9000	21.8990		
	0.1512		0.4353	

부모세대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가 자녀세대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데 있어 매개역할을 하는 것은 자녀의 교육수준이다. 앞서 <표 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은 자녀에 대한 교육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표 4>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분가한 자녀가구 가구주의 교육연수가 사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는 분가한 자녀가구 가구주의 연령, 성별과, 부모가구 가구주의 교육연수, 가구소득, 교육비 지출액, 고등학생 이하 학생 수, 전문대 이상 학생 수 등이 사용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구 가구주의 교육연수와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비지출액이 많을수록 자녀의 교육연수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분가가구 가구주의 성별, 부모가구 가구주의 교육연수, 소득, 전문대 이상 학생 수 등이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가가구 가구주 성별이 양의 부호를 갖는 것은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 가구 내 학생 수 등 가정환경이 유사한 경우, 남성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교육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교육기회에 있어 남녀 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가구 가구주 교육연수와 부모가구 소득이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은 부모세대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가 자녀세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부모가구의 교육비지출은 양의 부호를 갖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학생수와 관련된 변수를 제외할 경우 이 역시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분가가구 가구주 교육연수 결정요인 추정

	분가가구 가구주 교육연수			
	계수값	표준오차	계수값	표준오차
상수항	11.4550	0.8539 ***	11.2578	0.8374 ***
연령	-0.0069	0.0243	-0.0100	0.0244
성별	0.9193	0.3407 ***	1.2509	0.3435 ***
부모가구 가구주 교육연수	0.0981	0.0252 ***	0.1073	0.1073 ***
부모가구 소득	0.0028	0.0010 ***	0.0030	0.0030 ***
부모가구 교육비지출	0.0006	0.0049	0.0126	0.0126 ***
고등학생 이하 학생수	-0.2232	0.1429		
대학생 이상 학생 수	0.8125	0.1767 ***		
	0.1885		0.1391	

3. 부모가구의 교육 및 소득수준이 자녀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 2절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부모세대 가구주 교육격차 및 소득격차가 교육비지출 격차 및 자녀 교육수준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 교육수준의 격차는 다시 자녀세대의 소득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제3절에서는 분가한 자녀가구 소득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부모가구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자녀의 교육수준이 분가한 자녀가구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설명변수로는 분가가구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상태 더미변수 등 부모가구 소득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부모가구 가구주의 교육연수, 소득수준, 교육비지출 수준 등을 변수로 추가하였다. 단, 분가가구 가구주 연령 자승 변수와 분가가구 가구주 교육연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가가구 가구주 연령 자승을 제외한 것은 자녀가구 가구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 연령 대이기 때문에, 연령과 소득간의 이차항 관계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⁴⁾ 분가가구 가구주 교육연수를 제외한 것은 부모세대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교육비지출 등의 변수가 자녀의 교육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자녀의 교육수준을 포함한 추정결과는 부록에 소개하였다.

추정결과 자녀세대의 특성 변수 중 가구주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주 교육연수 등이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세대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는 비임금근로자 더미가 양의 효과를 갖지며, 실업자 더미변수가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 특성변수 중에서는 부모가구소득이 자녀세대 가구소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구 가구주 교육연수와 부모가구의 교육비지출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구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교육비지출이 자녀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부모의 교육수준과 교육비지출 수준은 가구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자녀의 교육수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부모가구의 소득수준은

4) 대체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은 4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의 교육수준에 대한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자녀가구의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즉, 교육수준이 동일하다면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자녀가 높은 소득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표 5> 분가가구 소득결정요인 추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상수항	-280.1727 *** (82.4700)	-305.7606 *** (83.0365)	-294.4538 *** (81.1504)	-315.7467 *** (82.9769)
가구주 연령	4.3590 ** (1.9700)	4.8088 ** (1.9528)	4.5617 ** (1.9170)	5.1952 *** (1.9895)
가구주 성별	8.4352 (30.4324)	-2.2201 (30.7424)	10.5621 (30.2961)	1.0339 (30.7865)
배우자 유무	48.5112 ** (22.4899)	54.2152 ** (22.7867)	48.5229 ** (22.4506)	54.8488 ** (22.7751)
가구주 교육연수	20.9118 *** (3.7434)	23.5118 *** (3.7048)	19.8560 *** (3.6066)	22.5527 *** (3.6685)
경제활동상태: 임금근로	32.0933 (39.5961)	46.5407 (40.0832)	34.1222 (39.5412)	46.8134 (40.0440)
경제활동상태: 비임금근로	83.3163 * (44.3278)	103.4370 ** (44.7840)	85.0075 * (44.2892)	102.9691 ** (44.7467)
경제활동상태: 실업	-140.1064 ** (56.6772)	-115.7704 ** (57.3041)	-135.5364 ** (56.5506)	-116.5331 ** (57.2317)
부모 교육연수	-2.6930 (2.0824)	-0.2168 (2.0027)		
원가구 소득	0.3267 *** (0.0814)		0.2968 *** (0.0757)	
원가구 교육비지출	0.0030 (0.3121)			0.2719 (0.3009)
	0.1898	0.1627	0.1903	0.1642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4. 소결

제2절과 제3절의 분석결과는 부모세대 교육격차가 부모세대의 소득격차를 가져오고, 부모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세대 교육격차와 소득격차로 이어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녀의 교육수준이 동일하더라도 부모세대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세대 소득격차가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연수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교육의 질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Ⅲ.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따른 필요재원 추계

1.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실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교육급여 지출, 대학생 대출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은 2005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수준이하 가구의 4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다.

<표 6>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2005년)

구분	지원기준	소득수준(4인가구)	지원율	아동수	비 고
1층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100%	44천명	◦ 지원단가 -0-1세 299천원 -만2세 247천원 -만3-4세 153천원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가구	136만원이하	80%	58천명	
3층	평균소득50% 수준이하가구	170만원이하	60%	80천명	
4층	평균소득 60% 수준이하가구	204만원이하	30%	90천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교육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교육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중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2004년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이 확대 실시되면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부교재비를 지원받고 있다. 품목별로 지급액을 보면, 학비는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교과서대는 연 1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다.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교재비는 연 1회 1인당 3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용품비는 연 2회 2.1만원씩 총 4.2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지원은 정부보증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보증대출제도는 기존에 실시되던 이차보전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차보전방식 하에서는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정부는 정부가 정한 금리와 대출기관의 금리 사이의 차이를 보전해주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까다로운 보증절차로 인해 학생들이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학부모

의 신용불량으로 대출을 못받던 학생들도 본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재학기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의 액수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현행 제도 하에서 재학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학부 및 일반대학원은 4천만원이며, 6년제 대학 및 그 대학원, 의학, 치학 법학 등 전문대학원은 6천만원이다. 학기당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등록금과 보증료 그리고 100만원의 한도로 하는 생활비를 합한 금액이다. 대출금리는 2006년 2학기 기준 연 6.8%이며, 저소득 대학생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무이자 및 2%의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이자 및 저리대출 대상자는 정부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며, 무이자는 이공계학생을 대상으로, 저리대출은 비이공계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무이자 및 저리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적용된다.

2.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대한 평가

2절에서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중심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의 장 단점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정부보증대출은 수혜자인 학생중심의 외부금융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비 조달은 전통적으로 가계 내에서 부모의 소득에 근거하여 조달되어 왔으며, 자식은 이후 부모의 노후 봉양이나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내부금융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저소득층에서는 교육비 지출이 커다란 부담이 되면서 교육비에 대한 과소투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가구에서 내부금융을 통한 교육투자 자금 조달에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반면, 고소득층에서는 교육에 대한 과잉투자의 징후가 나타나는 등, 내부금융을 통한 교육투자자금의 사회적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내부금융방식은 일반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매개로 한 금융시장의 기반을 축소시키는 등 금융 중개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게 된다. (하준경, 2006) 따라서 정부보증대출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외부금융방식이 활성화될 경우, 한계에 다다른 내부금융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보증대출은 저소득층 자녀가구의 미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원리금균등분할 시 500만원을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상환하고, 연 7%의 이자를 적용할 경우 월평균 상환액은 58,050원이 된다. 만일 500만원씩 8학기 동안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상환액은 464,400원이 된다.

<표 7> 상환방법별 월 상환액

(단위: 원)

	원리금 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1년 후	58,050	70,820
2년 후	58,050	67,910
3년 후	58,050	64,990
4년 후	58,050	62,070
5년 후	58,050	59,160
6년 후	58,050	56,240
7년 후	58,050	53,320
8년 후	58,050	50,410
9년 후	58,050	47,490
10년 후	58,050	47,490

주: 500만원을 거치기간 없이 연 7%의 이자로 10년간 상환하는 경우임
 자료: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제II장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부모세대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가 정부보증대출을 받고 미래에 이를 상환해 나갈 경우,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고소득층 자녀가구와의 소득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교육비지출 수준을 감소시켜 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세대간 이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보증대출제도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과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시 소요재원 추계

가. 추계방법

여기서는 『노동패널』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 시 소요 재원을 추계한다. 『노동패널』 7차년도 자료는 2004년도에 조사되어 2005년도에 공표된 자료이나 가구 소득은 2003년도 소득이 조사되어 있다. 이에 여기서는 소득년도에 맞춰 2003년도 자료로 가정하고 사용하며, 가구원의 연령 역시 2003년도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가중치를 고려할 경우 『노동패널』 7차년도 자료는 약 13,412,302 가구를 대표한다. 우리나라의 일반가구수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14,311,807가구로,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15,887,128 가구로 조사되었다⁵⁾. 따라서 본 추계가 200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가구 중 약 150~200만 가구 정도가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계결과가 다소 과소 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구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노동패널자료』가 비농촌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추계에서 최근 자료인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7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

5) 일반가구는 전체 가구에서 집단가구와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를 의미한다.

및 장래인구추계의 학령인구 수 등과 비교할 때 7차년도 자료의 오차율이 가장 작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최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한편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현금급여 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 그리고 빈곤가구와 차상위층 가구를 포함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로 정의하였다. 경상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보험금, 복권당첨금 등 일회성이 있는 기타소득은 제외되었다. 그리고 현금급여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생계급여 지급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타법 지원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표 8> 저소득층 구분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현금급여기준	313,224	518,749	713,504	897,489	1,020,445	1,151,478
최저생계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주: 가구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1인당 6인 이상의 급여의 10%를 더해 줌

<표 9>는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저소득층의 비중 및 저소득 가구 수를 계산한 것이다. 저소득 가구의 비중은 현금급여 기준 시 14.50%, 최저생계비 기준 시 17.34%, 차상위계층 포함 시 21.63%이며, 가구수로 보면 현금급여 기준 194.5만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232.5만 가구,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으로 290.1만 가구이다.

<표 9> 저소득 가구 수

(단위: 가구, %)

	총 가구 수	저소득층 비중	저소득 가구 수
현금 급여 기준	13,412,302	14.50%	1,944,499
최저생계비 기준		17.34%	2,325,027
차상위계층 포함		21.63%	2,901,226

교육비 지원대상 수는 저소득 가구원 중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수로 측정하였다. 실제 학생의 수는 학령인구의 수보다 적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아 진학을 포기한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교육비지원을 통해 모두 진학한다는 가정 하에 소요자원을 추계하였다. 학령인구는 만 나이 기준으로 중학생은 12~14세, 고등학생은 15~17세, 대학생은 18~21세이다. 남자의 경우 군 복무 등으로 인해 21세 이후에도 대학생 신분일 가능성이 많지만,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한 실제 학교에 있는 기간은 4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8~21세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노동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구 당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하는 연령 대의 가구원 수를 계산한 결과, 가구당 학령인구는 중학교 0.1388명, 고등학교 0.1254명, 대

학교 0.2075명 등으로 측정되었으며, 가중치를 고려하여 전체 학령인구수를 계산해 보면 중학교 1,861,149명, 고등학교 1,681,368명, 대학교 2,782,988명 등으로 측정되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서 학령인구수는 중학생 1,915,556명, 고등학교 1,847,029명, 대학교 2,979,293명으로, 본 추계에서 사용된 학령인구 수가 통계청 추계 보다 중학교 약 5.4만 명(2.8%), 고등학교 약 16.6만 명(9.0%), 대학교 약 19.6만 명(6.6%) 작음. 이러한 차이는 『한국노동패널자료』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0> 각 급 학교별 학령인구 수

(단위: 가구, 명)

	총 가구 수	가구 당 학령인구	전체 학령인구 수
중학교 (만 12~14세)	13,412,302	0.1388	1,861,149
고등학교(만 15~17세)		0.1254	1,681,368
대학교 (만 18~21세)		0.2075	2,782,988

각급 학교 별 저소득 학령인구 수는 <표 11>과 같다. 가구당 학령인구수를 계산해 보면, 전체 가구의 가구당 학령인구수 보다 저소득층의 가구당 학령인구수가 더 작다. 이는 가구수가 통계청 추계자료 보다 작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학령인구수의 오차가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 각 급 학교별 저소득 학령인구 수

(단위: 가구, 명)

	저소득 가구 수	각급 학교	가구 당 학령인구	학령인구
현금급여 기준	1,944,499	중학교	0.09333	181,480
		고등학교	0.07352	142,968
		대학교	0.12932	251,462
최저생계비 기준	2,325,027	중학교	0.11032	256,507
		고등학교	0.08085	187,982
		대학교	0.16717	388,667
차상위층 포함	2,901,226	중학교	0.12068	350,133
		고등학교	0.10133	293,973
		대학교	0.18090	524,844

한편 교육비 지원액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교육비 지원 규모 수준에서 지원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생은 부교재비 3만 원, 학용품비 4만 원 등 총 7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수업료 분기당 30만 원, 교재비 10만 원, 학용품비 4만 원 등 총 134만원을 지원받는다. 대학생은 국립대학교 평균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320만원(학기당 16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나. 추계 결과

<표 12>는 현금급여 기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이다. 총지원액은 중학생 127억원, 고등학생 1,916억원, 대학생 8,047억원 등 총 1조 90억원 규모로 추계되었다.

<표 12> 저소득 학생 교육비지원금 추계 결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기준)

(단위: 가구, 명, 원)

	저소득가구 수	저소득 가구 당 평균 학령인구 수	저소득 가구 학령인구 수	1인당 지원금액	지원액
중학교	1,944,499	0.09333	181,480	70,000	12,703,600,000
고등학교		0.07352	142,968	1,340,000	191,577,120,000
대학교		0.12932	251,462	3,200,000	804,678,400,000
합계				-	1,008,959,120,000

<표 13>은 최저생계비 기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이다. 총지원액은 중학생 180억원, 고등학생 2,519억원, 대학생 1조 2,437억원 등 총 1조 5,136억원 규모로 추계되었다.

<표 13> 저소득 학생 교육비지원금 추계 결과(최저생계비 기준)

(단위: 가구, 명, 원)

	저소득가구 수	저소득 가구 당 평균 학령인구 수	저소득 가구 학령인구 수	1인당 지원금액	지원액
중학교	2,325,027	0.11032	256,507	70,000	17,955,490,000
고등학교		0.08085	187,982	1,340,000	251,895,880,000
대학교		0.16717	388,667	3,200,000	1,243,734,400,000
합계				-	1,513,585,770,000

<표 14>는 차상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이다. 총지원액은 중학생 245억원, 고등학생 3,939억원, 대학생 1조 6,795억원 등 총 2조 979억원 규모로 추계되었다.

<표 14> 저소득 학생 교육비지원금 추계 결과(차상위계층 포함)

(단위: 가구, 명, 원)

	저소득가구 수	저소득 가구 당 평균 학령인구 수	저소득 가구 학령인구 수	1인당 지원금액	지원액
중학교	2,901,226	0.12068	350,133	70,000	24,509,310,000
고등학교		0.10133	293,973	1,340,000	393,923,820,000
대학교		0.18090	524,844	3,200,000	1,679,500,800,000
합계				-	2,097,933,930,000

<표 15>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사용될 중장기 재정소요를 예측하기 위해 2004~2010년 기간 동안 교육비 지원 규모를 추계한 결과이다. 추계를 위해 2003년 기준 저소득층은 계속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으며, 저소득층의 각 급 학교별 학령인구수는 통계청이 추계한 연도별 연령별 인구증가율에 따라 증가하고, 교육비 지원액은 연 5% 증가를 가정하였다.

현금급여 기준 총 지원액은 2003년 1조, 90억원에서 2010년에는 1조 2,938억원으로 연평균 3.6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최저생계비 기준 총지원액은 2003년 1조 5,136억원에서 2010년 1조 9,275억원으로 연평균 3.51% 증가하며,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총지원액은 2003년 2조 979억원에서 2010년 2조 6,881억원으로 연평균 3.60%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표 15> 교육비 지원 규모 전망(2004~2010)

(단위: 억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총 계
현금급여 기준	2003	127	1,916	8,047	10,090
	2004	139	1,987	7,898	10,024
	2005	151	2,104	7,788	10,042
	2006	161	2,271	7,815	10,247
	2007	169	2,483	8,012	10,664
	2008	175	2,698	8,395	11,269
	2009	180	2,881	8,983	12,044
	2010	183	3,025	9,729	12,938
최저생계비 기준	2003	180	2,519	12,437	15,136
	2004	196	2,613	12,207	15,016
	2005	213	2,766	12,037	15,016
	2006	228	2,986	12,079	15,293
	2007	239	3,264	12,383	15,887
	2008	248	3,547	12,976	16,771
	2009	255	3,788	13,884	17,927
	2010	259	3,978	15,038	19,275
차상위계층 포함	2003	245	3,939	16,795	20,979
	2004	268	4,086	16,484	20,838
	2005	291	4,326	16,254	20,871
	2006	311	4,670	16,312	21,292
	2007	326	5,105	16,722	22,153
	2008	338	5,548	17,522	23,408
	2009	348	5,924	18,749	25,020
	2010	353	6,221	20,307	26,881

V. 요약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부모세대 교육수준이 부모세대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 부모세대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부모세대의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녀의 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모세대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자녀의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세대 교육격차가 부모세대의 소득격차를 가져오고, 부모세대의 소득격차가 자녀세대 교육격차와 소득격차로 이어지는 교육격차와 소득격차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격차와 소득격차가 세대간에 이전되는 것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투자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의 인적자본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교육격차와 소득격차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보증담보대출 등을 통해 가계의 교육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방법 중 정부 보증담보대출은 저소득층 자녀의 미래 가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득격차 해소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교육비지원 방식과 정부보증담보대출을 결합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필요 재원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중·고등학교 및 대학진학 연령에 속해 있는 가구원이 모두 각 급 학교에 진학한다는 가정 하에,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현금급여보다 적은 가구의 가구원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약 1조 90억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가구의 가구원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약 1조 5,136억원, 그리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보다 적은 가구의 가구원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약 2조 979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한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지원제도는 학령인구에 도달해 있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별로 지원액을 차등화하여 교육비지원으로 인한 소득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보증담보제도와의 연계에 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현·방하남, 「고등교육 진학에 있어 가족배경의 영향과 성별 격차: 한국과 일본의 경우」, 『한국사회학』, 39(5), 2005, 119-151
- 김성희,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문숙재·김순미·김성희,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996, 171-183
- 이정우, 「교육과 소득분배」,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5, 70-1040
- 정영숙,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7(1), 1996, 1-14
- 하준경, 「가계의 교육비 부담증가와 금융시장」, 『주간금융브리프』, 15(13), 2006. 3-7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자료』, 1, 2, 7, 8차년도 자료
- Abdel G.M. & Schwenk, F., " Impact of Income and wife's education on Family Consumption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21), 21-28
- Becker, G., Human Capital,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64
- Becker, G.,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5
- Becker G. and Murphy, "The Family and the Stat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88,
- Lino, M., "Expenditures on a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3(3), 1990, 2-18
- Mincer, J.,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4.
- Schultz, T.,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961, 1-17
- Schwenk, F.N., "Households with Expenditures for Housekeeping Services, Including Child Care," *Family Economics Review*, 2(4), 1986, 15-20
- Stiglitz, J.,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65. 1975, 283-400
- Wolpin, K, "Education and Screening," *American Economic Review*, 67, 1977, 949-958